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제	정	2016. 07. 29.
개	정	2019. 05. 30.
개	정	2019. 11. 18.
개	정	2020. 12. 08.
개	정	2022. 01. 25.
개	정	2022. 03. 28.
개	정	2023. 12.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나라 장애인농구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효율적인 지도자·심판 및 선수 육성과 체육동호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장애인농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의 등록과 활동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수등록”은 협회에 장애인농구 선수(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대회동호인부)로 선수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도자등록”은 협회에 장애인농구 지도자로 지도자 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체육동호인등록”은 협회에 장애인농구 대회 참가를 위해 선수로서 등록하는 대회 동호인과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장애인농구 생활체육 참여를 위해 등록하는 생활 동호인으로 구분되며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4. “심판등록”은 협회에 장애인농구 심판으로 심판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5. “등록선수”는 제1호에 의거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6. “등록지도자”는 제2호에 의거 지도자활동을 목적으로 지도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7. “등록체육동호인”은 제3호에 의거 대회동호인과 생활동호인으로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8. “등록심판”은 제4호에 의거 심판활동을 목적으로 심판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9. “선수활동”은 제5호의 등록선수가 장애인농구의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 “지도자활동”은 제6호의 등록지도자가 장애인농구의 등록지도자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1. “체육동호인활동”은 제7호의 등록체육동호인이 장애인농구의 각종대회 참가를 하는 대회동호인 활동과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가를 하는 생활동호인 활동을 말한다.
12. “심판활동”은 제8호의 등록심판이 장애인농구의 각종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13. “단체회원”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협회 정관에서 정한 바에 의한 단체회원을 말한다.
14. “등록변경”이라 함은 협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된 자가 소속단체 및 등록지 등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5. “이적동의서”라 함은 등록선수가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전 소속 단체장의 서명이 날인된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16.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 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가 운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17. “도핑방지교육”이라 함은 세계반도핑규정에서 정하는 도핑방지교육을 말한다.
18.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함은 정보 예방교육통합관리에서 추천하는 성희롱·성폭력 분야의 예방교육을 말한다.

제3조(제정의무) ① 단체회원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단체회원에 소속된 장애인농구에 관한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의 등록과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 승인으로 정하고 협회에 보고한 후 시행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회원의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에 정한 사항이 이들의 등록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 밖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회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협회에 소속된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과 이들의 등록 및 활동에 관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전 등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의 선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대회 참가요강에 의한다.

③ 협회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의 선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협회가 정하는 대회

별 참가요강에 의한다.

④ 외국국적자의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에 대하여는 세계휠체어농구연맹의 규정 및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등록제한) ① 한 팀의 선수 및 임원이 타 팀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단, 임원은 동일한 시도에 한하여 장애인팀과 비장애인팀의 경우, 남자팀과 여자팀의 경우에 한하여 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장애인선수와 비장애인선수가 혼합하여 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남녀 혼성팀도 구성할 수 있다. 단, 동호인부를 제외한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 팀의 최대 등록인원은 25명으로 하고, 임원은 7인 이내로 한다.

④ 동호인부를 제외한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등의 경우 선수가 임원을 겸하려면 해당 팀의 코치로만 등록할 수 있으며 선수의 임원 겸임은 팀당 1명만 허용된다.

⑤ 동호인부를 제외한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등의 경우 등록된 팀은 연간 최소 2회 이상 대회에 출전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는 차기년도 팀 등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장애인전국체육대회, 장애인전국학생체육대회, 기타 전국규모로 인정되지 아니한 대회는 출전횟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장 선수 등록 및 활동

제6조(선수등록구분)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
2. 일반부
3. 대회동호인부

② 협회가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는 각 부별 등록에 따른 연령제한은 하지 않으나 각종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령제한은 대회참가규정에 따른다.

제7조(선수등록)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스포츠등급분류를 필하고 선수등록을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2. 다음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상이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상이자
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부상자
라. 지원대상자 중 舊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의 상이

자(2012.6.30. 이전 등록자)

제8조(선수등록 제한 및 취소) ①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제2항1호에서5호에 해당되는 선수는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등록절차를 마친 선수가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이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9조(선수등록시기) ① 등록은 매년 2월 28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신규 및 추가 등록하는 선수와 신생팀은 예외로 한다.

② 협회는 추가등록기간을 정하고, 이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한다.

③ 선수등록은 등록 마감일(추가등록 마감일 포함)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유효하다.

④ 2년 이상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새로이 등록할 경우 신규 등록자로 간주하며 등록기간의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선수등록자격) ① 선수등록은 정해진 등급분류규정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② 선수등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는 1년 이상의 일정기간 채용되거나 계약에 의해 소속을 정한 자
2. 일반부와 대회동호인부는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자

제11조(비장애인팀 선수등록방법) ① 비장애인팀 선수등록은 소정의 등록비와 선수등록서류를 갖추어 소속 팀 단위로 협회에 일괄등록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신청서류에는 선수 본인의 자필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필서명이 아닌 경우 선수등록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

② 추가등록 및 이적선수도 소속 팀을 통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신청은 협회에서 요청하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생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협회는 등록된 선수에 한해 선수등록증을 발급한다.

제12조(선수등록비) 선수로 등록하는 자에게는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선수등록자격의 제한) ① 외국에 등록된 선수이거나 외국 국적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제상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선수등록을 할 수 있다.

- ② 동일인이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대회동호인부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
- ③ 선수가 장애인농구 외에 다른 종목의 선수생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2 이상의 다른 종목의 경기단체에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종목에 등록할 수 없다.
- ④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

제14조(선수등록절차) ① 시·도지부는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장애인체육회가 운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등록절차에 따라 선수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선수등록은 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소속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선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수카드를 포함한 선수등록부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3. 시·도지부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1차 심사 후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경유란에 확인하여 시·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한다. 다만, 시·도지부가 결성되지 않거나 등록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의 2차 심사로 대체한다.
 4.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제출받은 등록서류에 대하여 제2차 심사 후 경유란에 확인하여 협회에 최종심사요청을 해야 한다.
 5. 협회는 선수등록의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15일 이내에 그 최종심사결과를 시·도장애인체육회에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전국연맹체에 통보한다.
- ② 협회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선수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 ③ 등록선수의 기본정보, 경기실적, 상벌사항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고 자료공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④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도핑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한국도핑방지규정’ 준수 서약을 하여야 한다.
 - ⑤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선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선수등록지) 선수등록은 개인 및 단체(팀)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부가 없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선수등록은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직접 등록한다.

제16조(선수등록변경) ① 선수등록을 마친 자의 등록사항 변경은 법제상별위원회에서 변경사유를 심사·결정하여 변경 조치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단체 및 소속단체의 변경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소속단체(또는 팀)의 해체 또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계약만료
2. 전 소속단체장이 이적동의서를 발급한 경우
3. 거주지 변경(생계유지, 직장이직, 가족단위 이사 등 이에 준하는 사항)
- ③ 제2항 제3호에 따라 거주지가 변경되는 선수는 소속단체장의 동의 없이도 소속단체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이 규정에서 정한 등록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등록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선수구제) ① 선수는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제상별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상별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의·조정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회장은 의견을 제시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선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제상별위원회의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속단체장이 이적동의서 발급을 부당하게 기피하는 경우 법제상별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일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적으로 구제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소속단체장 및 구제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해당 소속단체장은 구제결정을 따라야 한다.

③ 등록된 선수가 동 규정 및 특별한 사유로 부당하게 선수활동에 제한을 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실이 기록된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제상별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상별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구제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타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중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협회는 선수의 요청에 따라 즉시 부당등록을 시정하여야 한다.

⑤ 부당하게 이중등록이 되었을 경우 부정등록을 시킨 팀 및 관계자는 협회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조치한다.

⑥ 선수가 협회로부터 받은 최종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장애인체육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선수활동의 자격) ① 선수등록절차에 따라 선수등록을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장애인농구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선수활동의 여부는 등록절차에 따라 매년 선수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제19조(선수활동의 제한) ① 협회는 이적을 원하는 선수가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변경일로부터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2년 동안 선수활동을 제한한다.

② 유사단체 선수에 대한 등록 및 대회 참가는 협회의 실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선수등록을 마친 자라 할지라도 장애인체육회 및 협회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그 징

계에 따라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④ 등록된 선수가 협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회 규정에 따라 선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14조에 의하여 선수등록을 신청한 자라도 협회의 최종 확정이 되어야 선수활동을 할 수 있다.

제20조(선수활동 제한의 예외) 선수등록을 마친 자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협회가 정한 진단서를 제출한 자로 입원 또는 입원이외의 일반가료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자

2. 전 소속단체장이 특별한 사유(보호자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 가족의 전·출입이 확인될 경우 등에 한한다)를 인정하여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은 자이거나 법제상벌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이 확정된 자

3. 계약의 만료 또는 사직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동의서 발급 기피로 인하여 법제상벌위원회로부터 구제결정이 확정된 자

4. 외국에서 귀국한 자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 신체적성 및 경기력 등 운동선수로서의 기량이 월등하거나 우수선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당해 시·도지부와 시·도 장애인체육회장의 추천으로 법제상벌위원회가 승인한 자

제21조(선수이적) ① 타 팀으로 이적한 선수는 만 3년 이내에 재이적할 수 없다. 단, 3년이 경과한 경우 선수는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갖는다.

② 자유계약선수가 이적할 경우에는 만 3개월 전에 소속팀에 통보하여야 하고, 소속팀과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1차로 협의기간을 갖고 상호 합의하지 못한 경우 타 팀과 협의하여 이적할 수 있다. 단, 자유계약선수라 할지라도 해당 시도지부장의 서명이 날인된 이적동의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 3년 이내에 이적을 요하는 경우 “이적합의서(이적조건이 명시되고, 각 팀 단장의 서명날인 및 선수의 서명이 날인된 합의서)”를 해당 각 시도지부장의 서명을 받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적이 확정된 선수는 이 규정에 의한 소정의 등록절차에 따라 재등록하며, 선수등록증을 재발급 받는다.

⑤ 선수가 이적한 후 만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팀을 이탈하였을 경우 만 3년에 대한 잔여기간 동안은 선수자격을 상실한다.

⑥ 각 팀은 선수와의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복귀를 조건부로 선수계약을 정지하고,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탈퇴선수는 공시일로부터 선수로서의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1. 선수가 임의탈퇴 공시를 협회에 요청하였을 경우
2. 팀에서 임의탈퇴 공시를 협회에 요청하였을 경우
- ⑦ 복귀는 팀과 선수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협회에 임의탈퇴 공시 해지신청을 한 것으로 활동정지가 해지된다.
- ⑧ 임의탈퇴 공시 후 1개월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회에 조정신청을 낼 수 있다.

제3장 지도자 등록 및 활동

제22조(지도자등록구분)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자로 등록할 수 있다.

1.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 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제23조(지도자등록) 지도자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도자등록을 한다.

제24조(지도자등록 제한 및 취소) ①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제2항1호에 서5호에 해당되는 지도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등록절차를 마친 지도자가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이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지도자등록시기) ① 등록은 매년 2월 28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신규 및 추가로 등록하는 지도자 및 신생팀은 예외로 한다.

② 협회는 추가등록기간을 정하고, 이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한다.

③ 지도자등록은 등록 마감일(추가등록 마감일 포함)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하여야 유효하다.

④ 2년 이상 지도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새로이 등록할 경우 신규 등록자로 간주하며 등록기간의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지도자등록자격) 지도자등록은 협회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27조(지도자등록비) 지도자로 등록하는 자에게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등

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지도자등록절차) ① 시·도지부는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등록절차에 따라 지도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도자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지도자카드를 포함한 지도자등록부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2. 시·도지부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1차 심사 후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경유란에 확인하여 시·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한다. 다만, 시·도지부가 결정되지 않거나 등록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의 2차 심사로 대체한다.
3.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제출받은 등록서류에 대하여 제2차 심사 후 경유란에 확인하여 협회에 최종심사요청을 해야 한다.
4. 협회는 지도자등록의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15일 이내에 그 최종심사결과를 시·도장애인체육회에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전국연맹체에 통보한다.
- ② 협회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지도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등록지도자의 기본정보, 경기실적, 상벌사항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고, 자료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④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지도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도핑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한국도핑방지규정’ 준수 서약을 하여야 한다.
- ⑤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지도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29조(지도자등록지) 지도자등록은 개인 또는 단체(팀)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부가 없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지도자등록은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직접 등록한다.

제30조(지도자활동의 자격) 협회의 지도자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만이 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장 심판 등록 및 활동

제31조(심판등록구분) ① 협회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한다.

1. 국제심판
2. AOZ 국제심판
3. 국내심판

- 1) 1급
- 2) 2급
- 3) 3급

제32조(심판등록) 심판으로 활동하려는 자는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협회에 직접 심판등록을 한다.

제33조(심판등록 제한 및 취소) ①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제2항1호에서 5호에 해당되는 심판은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등록절차를 마친 심판이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이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4조(심판등록시기) ① 등록은 매년 2월 28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신규 및 추가로 등록하는 심판은 예외로 한다.

② 협회는 추가등록기간을 정하고, 이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한다.

③ 심판등록은 등록마감일(추가등록마감일 포함)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유효하다.

④ 2년 이상 심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새로이 등록할 경우 신규 등록자로 간주하며 등록기간의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제35조(심판등록자격) 심판등록은 협회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36조(심판등록비) 심판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심판등록절차) ① 협회는 장애인체육회가 운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등록절차에 따라 심판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심판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심판카드를 포함한 심판등록부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2. 협회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등록신청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3. 협회는 심판등록의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15일 이내에 그 최종심사결과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협회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심판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③ 등록심판의 기본정보, 경기실적, 상벌사항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고, 자료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심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38조(심판활동의 자격) 협회의 심판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만이 장애인농구 심판으로서 심판활동을 할 수 있다.

제39조(심판활동의 제한) 당해 연도에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자는 심판등록 및 활동을 제한한다.

제5장 생활동호인 등록 및 활동

제40조(생활동호인등록) 생활동호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2조 제3호에 의거 등록을 한다.

제41조(생활동호인등록시기) 등록기간은 시도장애인체육회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을 따르되,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등록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제42조(생활동호인등록절차) 생활동호인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장애인체육회가 운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43조(생활동호인등록지) 생활동호인 활동을 희망하는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직접 등록한다.

제44조(생활동호인의 자격) 시도장애인체육회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만이 장애인농구 동호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45조(생활동호인활동의 제한) 당해 선수로 등록이 된 자는 동일종목 생활동호인으로 등록 및 활동 할 수 없다.

제6장 징계조치

제46조(징계양정기준) ① 장애인체육회 및 협회에서 정한 등록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선수(보호자 포함) :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선수활동 금지

2. 지도자 :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지도자활동 금지
 3. 특수학교 관련자(교장, 관련교사, 코치 등) : 소속기관장에게 의뢰하여 징계회부(감독, 코치의 경우에는 제2호의 조치와 병행한다)
 4. 심판 :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심판활동 금지
- ② 징계만료 및 징계해제 후 재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이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종류, 징계대상자 및 징계기간의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제상벌위원회규정에 따른다.
 - ④ 통합정보시스템에서의 등록을 지연시켜 선수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관계자는 법제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자격을 최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계로 조치한다. 다만, 직원인 경우 협회 또는 해당 단체(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한다.

제47조(위반자 조치절차) ① 협회는 이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종류, 징계대상자 및 징계기간 등에 관하여는 법제상벌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② 특수학교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이외에 신분상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체육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③ 징계가 확정된 후 그 징계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경감, 변경 또는 해제시킬 수 없다.

④ 징계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징계의 해제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8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관련규정을 적용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49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세칙은 법제상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6.7.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 승인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이 제정되면 기존 선수및지도자등록규정은 폐지된다.

② 지도자등록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한하여 등록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심판등록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한하여 등록기간의 제한

을 받지 아니한다.

④ 선수 및 지도자는 제14조 제4항 및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한하여 도핑방지교육으로 인한 등록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며 2019년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 삭제한다.

부 칙(' 19.5.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 승인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제7조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선수등록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며 2021년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 삭제한다.

부 칙(' 19.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 승인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선수, 지도자 및 심판은 이 규정 제14조 5항, 제28조 5항, 제37조 4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한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인한 등록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20.12.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 승인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2조 2호의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며, 2022년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 삭제한다.

부 칙(' 22.0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 승인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2조 2호의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으로 등록을 허용하며, 2023년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 삭제한다.

부 칙(' 22.0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 승인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3.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 승인일로 부터 시행한다.

별첨1.

이 적 동 의 서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현 소 속 팀 :

본 ○○○○○장애인농구협회 소속인 상기 선수를 두 시·도 간의 합의와 선수동의
를 근거로 이적에 동의합니다.

☐이적조건

- 1.
- 2.
- 3.

년 월 일

년 월 일

○○○○○장애인농구협회

○○○○○장애인농구협회

회장 : (인)

회장 : (인)

별첨2.

이 적 합 의 서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현 소 속 팀 :

본 ○○○○○휠체어농구단 소속인 상기 선수를 두 시·도 및 두 팀 간의 합의와 선수동의를 근거로 이적에 합의합니다.

☐이적조건

- 1.
- 2.
- 3.

년 월 일

○○○○○장애인농구협회

회장 : (인)

년 월 일

○○○○○ 휠체어농구단

단장 : (인)

년 월 일

○○○○○ 장애인농구협회

회장 : (인)

년 월 일

○○○○○휠체어농구단

단장 : (인)